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10. 28 선고 2022나103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2. 9. 23.

판 결 선 고 2022. 10. 28.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1가합27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583,1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석, 판사 이강은, 판사 서여정

선 정 자 명 단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끝.

